

04427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6529 / 전송(02)792-5208
학술국 국장 장원현 [6564] 학술교육팀장 손용석 [6518] 담당 김준환 [6529] / E-mail: alexantel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442-16376호

시행일자 2024. 3. 26.

수 신 338개 연수교육기관장

참 조

제 목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관련 안내의 건(제2024-1호 연수교육 지침 변경)

1. 귀 교육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

가. 제41대 제11차 연수교육 시행·평가단 운영위원회(2024.2.19)

나. 제41대 제144차 상임이사회 의결(2024.3.21)

3. 상기 근거 관련하여 연수교육 시행·평가단에서 논의를 거쳐 변경된 지침을 제2024-1호로 안내드리오니 동 지침을 숙지하신 후 교육을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동 지침관련 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각 교육기관에 있으므로 각 교육기관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○ 안내 사항

1) 온라인 연수교육 인정기간 연장

가) 배경 : 기존 한시적으로 연장하였던 온라인 연수교육 인정기간을 올해까지 연장하고 추후 연장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함.

나) 연장기간 : 2024년 12월 31일

다) 온라인 연수교육 진행방식은 기존과 동일

2) 2024년도 연수교육 관련 심의기준 주요 변경사항

가) 연수교육 시 고령(65세 이상)인 경우,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교육과정에 있는 회원(전공의)을 제외하고 유료 등록을 원칙으로 함.

나) 개정 지침[첨부 : 제 2024- 1호 연수교육 지침 참조]

- 강사 및 좌장 1인당 최대 강연 수 신설
- 최소 강연 시간은 15분 미만의 강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, 초록 발표, 자유연제, 구연발표 등은 제목에 표기하는 경우 인정 신설
- practice 중심의 강연 내용에 대한 기준 신설
- 오프라인 교육은 반드시 자동출결관리시스템(바코드 등)으로 출결 관리 신설
- AI 강의에 대한 평정 인정 기준 신설 등

3) 사이버 연수교육 5평점 인정 회귀(※소속 회원 대상 안내 요청 사항)

가) 배경 : 1년 8평점까지 인정되던 사이버 연수교육이 2024년도부터 코로나-19 사태 이전인 5평점으로 회귀

나) 기타사항 : 2023년도 회비 납부자 무료, 미납자의 경우 과목당 11만원

※ 일부 교육(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기본교육, 촉탁의 등)의 경우 회비 미납자 수강 불가

첨부 : [제2024-1호]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(교육기관용)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”

